법제상벌규정

2009년 2월 27일제 정2014년 4월 25일개 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요트연맹(이하 "본 연맹"라 한다.) 정관 제37조에 의거 설치하며, 이를 법제상벌위원회라(이하 "본 위원회"라 한다.)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대한민국 장애인요트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비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장애인요트계의 풍 토를 조성함에 있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연맹 관계자 및 본 연맹에 가입한 선수, 임원 및 지도자(심판포함)에게 적용한다.
- 제4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 - ① 표창에 관한 사항
 - ② 징계에 관한 사항
 - ③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
 - ④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
제5조(조직)

-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연맹 전무이사가, 부위원장은 본 연맹 총무이사가, 위원은 상임이사 전원으로 선임한다.

제6조(운영)

-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
- 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2.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.

제2장 표 창

- 제7조(종류) ① 본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.
 - ② 장애인요트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하는 체육상은 다음과 같다. 경기부문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)

지도부문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)

공로부문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)

연구부문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)

심판부문(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)

- 제8조(절차) ① 체육상은 시·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.
 - ②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- 제9조(표창시기)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.
 - 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
 - 1. 본회 창립기념일
 - 2.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상 시상일
 - 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
 - 1. 장애인요트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
 - 2.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

제10조(구비서류)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표2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징계

제11조(증거우선의 원칙)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징계종류)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1. 중징계는 자격정지, 출전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.
- 2. 경징계는 경고 및 근신으로 한다.
- ② 대회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.

제13조(징계의 종류) ① 대상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.

대 상	징계의 종류	정 의				
	제명	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고, 명부에서 삭제함.				
등록단체(팀)와	등록금지	협회의 단체 또는 소속원으로서 등록을 금지함.				
그 소속 원	자격정지	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중단시킴.				
	출전정지	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출전을 정지시킴.				
(선수, 지도자),	경기제한	무관중 경기진행, 홈경기 개최금지 또는 제3지역에서 경기를 진행토				
심판 등 협회의		록 함.				
행정적용을	근신	7일 이상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상근무하면서 일일 반성문제출				
받는 자		또는 요트와 관련한 사회봉사 실시함.				
	경고	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함.				
	제명	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, 명부에서 삭제함.				
	면직	직위를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시킴.				
협회, 시·도 협	정직	직위는 유지하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직무에 종사하지				
회 및 4개유형 별 협회의 임직 원		못하며, 총 급여의 1/3만 지급함.				
	감봉	직무에 종사하되,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총 급				
		여의 2/3만 지급함.				
	근신	7일 이상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일일 반성문 제출				
		또는 요트와 관련한 사회봉사 실시함.				
	경고	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함.				
시·도 협회 및 4개유형별 협회	제명	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고, 명부에서 삭제함.				
	활동정지	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그 활동을 정지시킴.				
	경고	경미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함.				

- ② 경기 중 경고 및 퇴장에 관한 사항은 심판 권한으로 의한다.
- ③ 경기중 경기몰수,재경기,경기무효 등 상벌규정에 포함할 수 없는 조치는 대회 규정으로 한다.

- ④ 본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른다.
- 제14조(징계대상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.
 - 1.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
 - 2.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
 - 3. 각종 대회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
 - 4. 각종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 받은 경우
- 제15조(출석요구)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.
 -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.
 - ⑤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- 제16조(심문과 진술권)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 -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제척 및 기피)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

- 그 징계사건의 심사 ·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- 제18조(징계의 양정)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, 인품, 공적, 개전의 정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징계의 통보)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재심사 요구) ① 본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-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본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 결과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이의신청) ① 본 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장애 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이의신청은 본 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- ④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 15조 내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본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⑤ 이의신청에 대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다.
- 제21조(징계의 의결) ① 본 연맹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,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 - ② 본 연맹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본 협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, 그 즉시 징

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- ③ 본회의 이의신청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당해단체는 그 결정 결과에 따라이를 당해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,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본 연맹은 전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 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케 하여 징계의결 고의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⑤ 전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)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 협회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결한 징계에 대한 해제 또는 경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제23조(징계의 보고) 본 연맹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본 협회 이사 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대한장애인체 육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상벌 위원 회규정에 따른다.
- 2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1】대회중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세칙

- 제1조(근거 및 목적) 본 세칙은 본 연맹 상벌위원회 제12조 2항에 의거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 질서를 조기에 정착하고 요트인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 세칙은 본 연맹 시, 도 지부 및 기타 산하 모든 조직에서 주관하는 대회 중 발생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(징계대상)

- 1. 단체 임·직원(심판 포함)
- 2. 연맹 및 시·도 협회 임직원(심판 포함)
- 3. 등록단체(팀)
- 4. 등록단체의 임원 및 선수
- 제4조(징계절차) 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자는 사건발생 직 후부터 상벌위원회의 징계 확정시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.
 - ② 본 연맹은 사건발생후 즉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, 48시간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.
 - ③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④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본 연맹는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직접 송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고하여야 한다.
 - 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⑥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은 본 연맹이사회에서 하며, 재심 청구일로부터 3일이내에 본 협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5조(징계해제 및 경감)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선의 의지가 뚜렷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조치를 할 수있다.

- ②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이 1/2이상의 경과되어야 하며, 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6조(제재조치) 징계대상자가 징계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연맹 상벌위원회가 해당단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유형별 징계기준)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본 규정은 이사회의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『유 형 별 징 계 기 준』

1. 심판 및 임원

가. 심판배정상 불공정 행위 : 자격정지 1년 이상

나.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: 자격정지 1년 이하

다. 불공정한 심판행위 : 무기한 자격정지

(고의적 부정행위)

라. 음주 및 소란 행위 : 무기한 자격정지

2. 선수

가. 심판 판정 불복 폭언 : 차기 1개대회 이상 출전금지

나. 심판에 대한 폭행 : 출전정지 1년 이상

다. 부정 출전 선수 : 출전정지 6개월 이하

라. 선수상호간 폭행

→ 주동자 : 출전정지 1년 이상

→ 가담자 : 출전정지 6개월 이하

마. 음주 및 소란 행위 : 출전정지 1년 이상

3. 지도자

가. 심판판정 불복(경기지연)폭언 : 자격정지 3개월 이상

나. 심판 및 선수등에 대한 폭행 : 자격정지 1년 이상

다.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: 자격정지 1년 이상

라. 선수지도 감독 소흘에 의한

물의를 야기한 자(교사) : 자격정지 1년 이상

마.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: 자격정지 6월 이상

바. 경기장 집단폭행사태 가담행위

→ 주동자 : 무기한 자격정지

→ 가담자 : 자격정지 1년 이상

사.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: 출전정지 6개월 이하

아. 음주 및 소란 행위 : 출전정지 1년 이상

4. 단체(팀)

가. 심판불복 경기 방해 : 출전저지 6월 이하

나. 경기장 폭행 난동 : 출전정지 1년 이상

다.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: 출전정지 6개월 이하

라. 음주 및 소란 행위 : 출전정지 1년 이상

5. 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.

【별표2】 공적조사서 양식

공 적 조 서 (원 본)									
1)성 명	(한자)	2)소 속							
3)본 적		4)계 급		5)군번					
6)주 소		7)주민등 록번호		8)병과					
9) 직 위 및 직급	10)근무 기간	11)수공 기간		12)수공 장소					
13)추천 훈열	14)추천 서열	15)사정 훈격							
주 요 경 력 (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)									
16)년월일	17)이 력	18)년월일	19)이		력				
과거 포상기록 (훈장, 포장, 표창별로 기록)									
20)년월일	21)내 용	22)년월일	23)내		<u> </u>				
조 사 자									
24)소속									
25)계급		26)직 책							
27)성명									
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.									
200									
추천관직위 성명 직인									

공	적	사	ਡੇ -